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31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2
【참고자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4.

다. 회부연월일 : 2024.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 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신설></u>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각 호</u> <u>의 사항을 준수</u> ----- -----.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u>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 ----- ----- ----- ----- -----제5항-----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2조제5항-----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 제22조제6항----- ----- ----- ----- -----
3의2. ~ 6. (생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2조제2항1)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를 규정하면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사항만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량문자전송사업자²⁾에 대해서는 등록시 제22조제2항제1의2에 따른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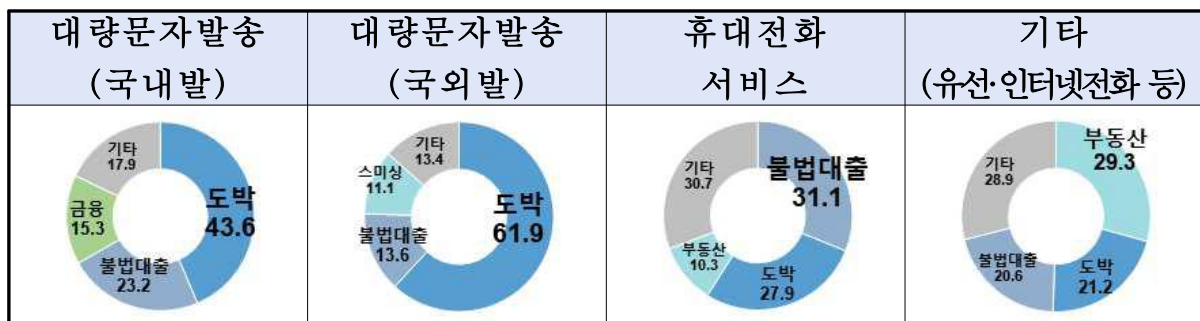
- 1)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 이처럼 문자전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³⁾의 난립으로 스팸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 (8,420만건 ↑) 증가⁴⁾하였으며, 발송경로별 신고·탐지 건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국외발 문자스팸이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발송경로별 상위사업자 광고유형별 신고·탐지 비율>

(단위: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2024. 4.

○ 개정안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요건 중 기술적 조치 계획에 한정하여 조건을 부과하던 것을 등록요건 전체⁵⁾에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2022년 하반기) 1,277만건 → (2023년 상반기) 1억 89만건 → (2023년 하반기) 1억 8,509만건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등록요건의 준수여부와 조건 부과사항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이후에는 등록 당시의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스팸문자가 문자재판매사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등록요건 준수여부 등 사후적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여 불법스팸을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이러한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은 정부의 「불법스팸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24.11.28.)⁶⁾에서도 대량문자유통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제시된 바 있는 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 동 개정안에 대한 공동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개정 취지에 따라 등록 이후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적 관

5) 기술적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

6) 「불법스팸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4.11.28) 주요 내용

<전략2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4] 문제사업자 영업정지 및 시장퇴출

- (운영현황 점검)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등록요건 준수여부 등 점검(연1회) 및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리·감독을 통해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 및 사업자 난립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요건 준수를 담보하고 대량문자를 통한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점검기능 신설시 동 법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⁷⁾에 방통위 기능의 위탁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이동통신3사는 기본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며, SKT는 등록요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까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⁸⁾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

7)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

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9)에 따라 등록요건 중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중이므로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시 등록요건 준수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중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는 현행법상 문자사업

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9)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검사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 7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대상으로 발신번호 변작은 과기정통부, 불법스팸은 방통위
에서 연 1회 이상 현장실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추가 규제로써 2중, 3중 과중한
규제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자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	등록 요건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 사업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 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2)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4)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	---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
라. 사업계 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 호 계 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